

창원지방법원 2022. 5. 20 선고 2021나60660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2. 5. 20 선고 2021나60660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7. 13 선고 2021가단27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

담당변호사 최학세

변론종결 2022. 4. 15.

판결선고 2022. 5. 20.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7. 13. 선고 2021가단27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5,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패소 부분 중 일부만 항소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3면 아래에서 6행의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만 F의 아내인 O이 위 N 부동산의 매매대금 상당액인 34,8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기는 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위 돈이 상속재산에서 지급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 등의 상속분이 침해되었다거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갑 제2호증 기재 상속합의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구년, 판사 정강은, 판사 조유리